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쏠 소상공인·소기업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 콜라텍 · 무도장 · 노래(동전)연습장 · 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 식당카페(홀덤편·편의점)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오락실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DVD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 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규모(붙임3) :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③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④ (영업여부) ' 21. 12. 18.~' 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⑤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⑥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⑦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 (지원제외 대상)

-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 · 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지원금액)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2.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2. 3. 10. ~ 5. 13.(65일간) * 온라인(3.10~)+방문접수(3.22~)

구분	(1차) 집합금지	(2차) 영업시간제한	(3차) 일반업종
간편·확인 지급대상	3. 10.(목) ~	3. 15.(화) ~	4. 1.(금) ~

* (간편지급대상) 정부지원금 및 시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 * 사전 신청안내 문자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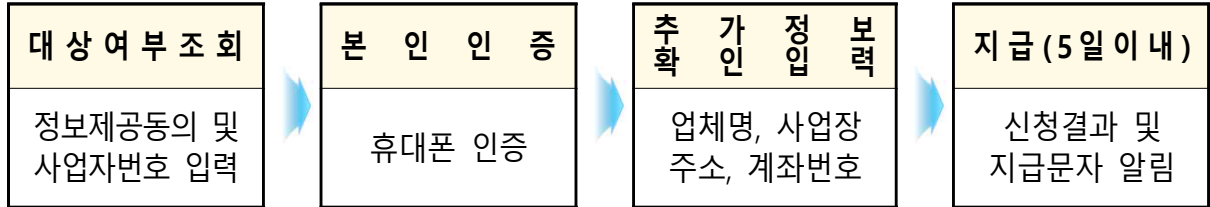
* (확인지급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

□ (홀짝제 접수)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3. 10.(목)~31.(목)

- (예시) - 3월 10일 출생년도(1990년) 끝자리 숫자 짝수 : 접수가능
- 3월 11일 출생년도(1991년) 끝자리 숫자 홀수 : 접수가능

□ (신청절차)

- ①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21.3월), 희망회복자금(' 21. 8월), 1차 방역지원금(' 21. 12월)

- ②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연매출액 규모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 (신청서류)

- ①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②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 (주점·음식관련) 영업신고증
 -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 (파티룸) (방역지원금)행정명령이행확인서 또는 시설분류확인서
 -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 (마사지·안마소)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구분으로 시설분류가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대체 확인 / 금지·영업(시간)제한업종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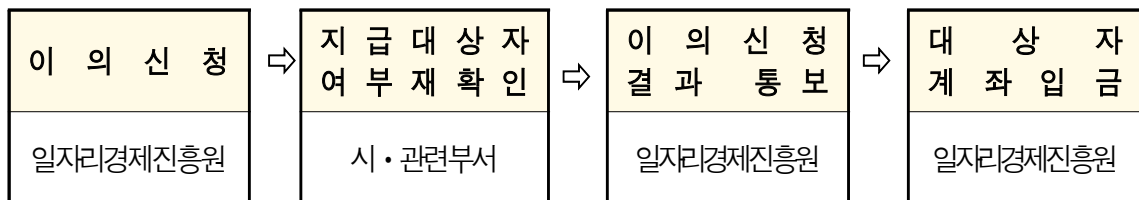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 월별 매출감소 기준 및 비교 구간의 상세기준은 (붙임1) 참고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연매출
	기준	비교	
21년1월~6월	21년 2월~9월	21년 7월~22년 2월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구간 연매출 환산
21년7월~12월	21년 8월~22년 1월	21년 12월~22년 2월	
22년1월~2월	22년 2월~3월	22년 3월~4월	

4. 이의신청

- (일정) ' 22. 4. 1.(금) ~ ' 22. 5. 27.(금)
- (대상) 부지급 통보받은 대상자 / * 통보 후 2주 이내
-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 (절차)



5.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 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붙임 1

개업시기별 월 평균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월	매출액		
	기준기간 ①	비교기간 ②	비교기간 ③
2021년 1월	'21. 2월~'21. 6월	'21. 7월~'21. 10월	'21. 11월~'22. 2월
2021년 2월	'21. 3월~'21. 6월	'21. 7월~'21. 10월	'21. 11월~'22. 2월
2021년 3월	'21. 4월~'21. 7월	'21. 8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4월	'21. 5월~'21. 7월	'21. 8월~'21.11월	'21.12월~'21.2월
2021년 5월	'21. 6월~'21. 8월	'21. 9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6월	'21. 7월~'21. 9월	'21.10월~'21.12월	'22. 1월~'22. 2월
2021년 7월	'21. 8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8월	'21. 9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9월	'21. 10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10월	'21. 11월~'21. 12월	'22. 1월~'22. 2월	
2021년 11월	'21. 12월	'22. 1월~'22. 2월	
2021년 12월	'22. 1월	'22. 2월	
2022년 1월	'22. 2월	'22. 3월	
'22년2월20일 이전	'22. 3월	'22년 4월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익월 매출액부터 적용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구간이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기준기간 ① 평균매출액 대비, 비교기간 ② 또는 ③의 평균매출액 감소(택1)

*** 정부지원금*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감소로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간편지급 대상으로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21. 3월), 희망회복자금(' 21. 8월), 1차 방역지원금(' 21. 12월)

붙임 2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 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연락처(HP)	
	사업장 주소	대전광역시 구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본인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청한 입금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할 수 없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등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청 및 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특별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신청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연락처 :

대전광역시 귀하

위 입 장

상기 대리방문인에게 위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업종별 추가서류(공고문 참고)	수수료 없음
------	--	-----------

붙임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4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